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6 선고 2017가단10406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6. 28.

판결 선고2018. 7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38,753,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8. 9.부터 2018. 1. 8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정일예

별지